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2060459 판결 [점유회수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화, 담당변호사 이재용

변론 종결 2019. 6. 14.

판결 선고 2019. 7. 12.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가합616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층, 6층, 7층, 8층, 9층,

나. 같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 1)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부분(D호), 2) 같은 도면 표시 5, 6, 7, 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부분(E호),
 - 3) 같은 도면 표시 6, 8, 9,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부분(F호),
 - 4)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부분(G호), 5)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부분(H호), 6)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부분(I 호)을,
- 각 인도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5층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줄의 '피고 주식회사 B'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로, 그 이하의 '피고 B'을 'B'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C'라 한다)" 및 '피고 C'를 '피고'로, 제4쪽 제18줄의 '매매'를 '2017. 3. 17.자 매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로서 2009년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2017. 11.경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이 2017. 11. 1. 및 같은 달 20. 원고의 점유를 강제로 침탈하였고, 피고는 B의 위법한 점유 침탈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그 점유를 넘겨받은 '악의의 특별승계인'으로서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청구취지 기재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하수급인들 10여명이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들과 합의한 후 이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공동으로 점유하던 AI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소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2017. 11. 13. AI과 합의하여 AI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인도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점유하지 않았다. B은 하수급인들과의 유치권합의를 틈타 부당하게 돈을 받고자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려는 원고 직원들을 막았을 뿐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지 않았다. 설령 B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피고는 B이 AI과 합의한 후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이전받았을 뿐 그러한 점유 침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점유 여부

1) 관련 법리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04조 제1항),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 살피면 된다.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적 지배 여부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 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7510 판결),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은 불법점유도

침탈된 경우 민법 제204조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I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청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후 AI 직원이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침대를 두고 기거하면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열쇠를 관리한 사실, 위 점유회수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2017. 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G호 및 H호의 도로 쪽 창에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 주)AI"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을 뿐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표지는 없었던 사실, B과 AI은 위 점유회수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1. 13. B이 AI에 12억 2,899만 원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AI이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G호 및 5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같은 날 B이 위 합의에 따라 AI에 1,039,806,500원을 입금하였고, AI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철거하고, 잠금장치를 인계하는 등 B에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을 인도한 사실, AI이 제기한 위 점유회수청구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B을 상대로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또는 하수급인들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후행 가처분 결정이 2016. 8.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4, 15, 16, 23, 27, 29, 31, 37, 39, 40호증의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AL의 증언(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0. 27., 같은 해 11. 13.경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이 공실로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던 사실, 2층 도로 쪽 창문 및 1층 G호, H호 도로 쪽 창문에 "A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각 글자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E호, F호의 도로 쪽 창에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 주)AI"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며, D호, E호, F호, 2층 건물 안쪽 출입문 및 유리벽에는 원고 명의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B이 2017. 8. 7. 이 사건 건물 중 G호 도로 쪽 창에 'G호는 AI의 사무실이니 불법인원고의 유치권 부착물은 즉시 제거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부착한 사실, 원고가 2017. 7. 21.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17가합56543)를 제기한 후언젠가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에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경고문

내용에 위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부착 시기는 소 제기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7. 10. 24. 주식회사 AJ와 무인기계경비 방법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 B의 AK, AM이 2017. 11. 1.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한 사실, 원고의 직원 AL이 2017. 11.20. 06:51:52 유치권을 침탈당했고, 건물 유리창을 파손하고 들어간 것 같으며, 내부는 모르겠으나 밖에 관련자 10여명이 모여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사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신고자는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데, 건물 외부에서 출입을 금지당한 상태였고, 건물주는 건물 내부에 있으면서 직원 10여명을 신고자 등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건물 내외부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주 출입문의 열쇠박스를 교체한 사실, 같은 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T호에 원고의 유체동산이 방치되어 있으니 즉시 가져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7. 11. 22. AC에 B이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니 매도를 보류하거나 매수인에 게 고지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AC에 2017. 11. 23. 도달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7. 11. 27.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2017.11. 28. 도달한 사실, 원고가 2017. 11. 23. 이 사건 건물 바로 앞 가로수에 원고가 B을 상대로 유치권소송 중 B의 불법 점유 침탈로 분쟁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그 후 주차장 출입구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주변을 둘러싸는 펜스가 설치된사실, B이 2017. 10.말부터 2017. 11. 6.까지 원고의 임원들인 AN, AL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검사는 원고의 임직원들이 AI의 허락에 따라 G호를 점거, 사용하였고, AI이 G호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B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점유 침탈을 주장하는 2017. 11. 20. 이후 B의 대표 AK을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8. 8. 2. 원고의 임원인 AL이 점거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G호 사무실에 AK이 임의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점유는 유치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임의로 개시된 불법점유로서 건조물침입죄나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점유 여부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점유침탈을 주장하는 2017. 11.경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나머지까지 점유하고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09년경 선행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B을 상대로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에 관한 후행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AI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B이 이 사건 건물 중 공매대상 부분을 취득한 2015. 7. 15.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미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B은 공매대상 부분의 취득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하수급인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AI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들을 퇴거시켰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AI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B이 2015. 7.29. 이를 침탈하자 AI은 즉시 B을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AI과의 공동점유를 주장하는 원고는 침탈된 점유를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일 원고가 그 무렵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AI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또한 2017. 8. 이전까지는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경비계약일자, 경비대금 지급일 등은 모두 그 이후의 자료들이다.

라) 위 점유회수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 AI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점유를 회복하였고, 그 이후부터 B과 합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인도한 2017. 11. 13.까지는 AI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마) 당심 증인 AI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G호 등에 원고 명의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자판을 붙였다고 증언하였고, 건물 내부에 부착한 경고문 또한 그 무렵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원고의 임원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수사 결과 원고가 AI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본 점, 원고가 B의 대표 AK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수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임의로 불법 점유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아무리 빨라도 위 점유회수청구사건의 제1심판결에 따라 AI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점유를 회복한 이후 이 사건 건물 G호를 임의로 또는 AI의 허락을 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G호 이외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은 AI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던 시기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의 영상 등에 불과한 점, AI은 위 점유회수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현장검증 또는 B과의 합의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건물 G호 외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는 의미로서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2009년 이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하다가 적어도 후행 가처분결정 이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다시 2009년부터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이 원고의 임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위 점유회수청구사건의 제1심판결에 따라 AI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점유를 회복한 후 허락을 받아 G호를 점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점유시기 및 점유개시 경위에 관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아) 원고가 AI과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공동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B과 AI의 합의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원고가 이러한 합의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나. G호에 대한 점유 침탈 여부

B의 대표 및 직원들이 2017. 11. 20. 원고의 직원 AL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중 G호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원고의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사건건물 앞을 지켜서 있었던 사실, B이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서 원고의 직원을 배제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방치된 원고의 물건을 가져가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사실, 이후 같은 목적으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을 따라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공동 침탈자 또는 악의의 특정승계인인지

1) 공동 침탈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7. 3.경 이 사건 건물 중 AD호, AE호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 침탈 직후인 2017. 11. 23. B로부터 나머지 호실을 이전받았는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B과 공동으로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악의의 특정승계인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점유 침탈 수개월 전 이 사건 건물 중 AD호, AE호를 취득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2017. 11. 13.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7. 11. 23. 이전받으면서 원고의 점유 상황을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의 직원 AO은 침탈 전부터 유치권 행사 중인 G호를 수차례 방문하여 원고 직원과 접촉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원고는 침탈 후에는 불법 침탈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이 사건 건물 앞에 걸었으며, 수탁자인 AC과 매수인인 피고에게 불법 침탈을 알리는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침탈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건물 중 G호의 점유를 이전받은 악의의 특정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3.경 이 사건 건물 중 AD호, AE호 및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매수할무렵 AI이 G호를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B이 2017. 11. 13. AI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인도받은 사실, AI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B이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원고가 2017.11. 23. AC에, 같은 달 27. 피고에게 각 불법 점유 침탈이 있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2013. 11. 23.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 2017. 11. 23. 이후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앞에 불법 점유 침탈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43, 44, 48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P병원의 대표 AQ이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데 AO이 AP병원의 직원인 사실, AP병원의 대표 AQ이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B이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침탈당한 사정을 알고 그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악의의 특정승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 AD호, AE호 및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매수할 당시인 2017. 3. 17.경 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AI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 원고가 이를 점유하지 않았다.
- 2)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매수함에 있어 이를 인도받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매도인인 B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AI과 합의를 하고, AI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피고는 B로부터 소유권이 전등기 및 점유를 이전받았다. 매도인인 B이 반드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야만 매수인인 피고에게 G호를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당시 B이 G호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자신에게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던 AI이 B과 합의한 이상 그 인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대한 점유 침탈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AC 및 피고에게 그에 관한 통지를 한 것은 2017. 11. 23. 이후로서 그것만으로 피고가 이에 대한 점유 승계 당시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4) AO이 AP병원의 직원이고, AP병원의 대표자 AQ이 피고의 사내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AP병원과 피고를 같은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AO을 피고의 직원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AO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당연히 이를 알았거나 나아가 그 점유가 침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AD호, AE호를 취득한 이후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매도인인 B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오던 AI과 합의하여 AI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서 퇴거한 점, B은 일관되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점유하지 않았고,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점, B이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하면서 G호의 점유를 침탈해서 이전한다는 사정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는 AI이 퇴거한 이후 B로부터 그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받은 점, 피고로서는 AI과의 합의로써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AI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2017. 8. 이후에는 원고도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점유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나아가 B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갑석, 판사 김재령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인천 미추홀구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9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빌딩]

지하3층 871.22㎡

지하2층 1,245.26㎡

지하1층 1,131.51㎡

1층 889.94㎡

2층 1,013.44㎡

3층 1,013.44㎡

4층 1,013.44㎡

5층 1,013.44㎡

6층 1,013.44㎡

7층 991.88㎡

8층 991.88㎡

9층 631㎡

2011

끝.

별지 2

